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
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
일부 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권오을 (국가보훈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6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일부 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업무지침으로 운영되고 있는 고엽제후유증 환자·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인지를 판단하는 검진의 기준을 법제화하여 검진의 신뢰성 및 국민 알권리를 제고하고 자 함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
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검진에 필요한 검진기준(검진항목, 고려사항 등을 말한다)은 국가보훈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검진) (생략) <u><신설></u>	제4조(검진) ①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 ② 제1항에 따른 검진에 필요한 검진기준(검진항목, 고려사항 등을 말한다)은 국가보훈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국가보훈부 심사기준과	
연 락 처	(044) 202 - 5429